##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72

발의연월일: 2025. 1. 13.

발 의 자:임오경·김재원·김윤덕

이용우 • 조계원 • 박수현

진성준 • 윤호중 • 한병도

민형배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가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도록 하고,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여전히 국토교통부, 국가보훈부 등 중앙행정기관 중 전문용 어 표준화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이 있어 해당 규정에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음. 또한, 전문용어표준화 협의회가 구성되었더라도 회의 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.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에서 전문용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와 국민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 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를 두도록 하고, 회의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전문용어를 적극적으로 표준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

록 하고 국어문화를 보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2항, 제3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제2항 중 "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둔다"를 "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어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는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전문용어의 표준화 등) ①	제17조(전문용어의 표준화 등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용어의	②
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	
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	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
협의회를 둔다.	를 두어야 한다.
<u> &lt;신 설&gt;</u>	③ 제2항에 따른 전문용어 표
	준화협의회는 전문용어의 표준
	화 및 체계화에 필요한 사항을
	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
	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.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